

제148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

제1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	1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5면
2.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	9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12면
3.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	14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26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3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단 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,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를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함(안 제7조)
- 나.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비율과 비.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·직원의 겸업금지대상에 단서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, 안 제12조)
- 다.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의거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“3월 내”에서 “2월 이내”로 함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, 지방공기업법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확보 예정(사외이사의 보수)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 - 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5인”을 “7인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

②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구의 국장 2인
2. 경영, 회계 및 시설물 관리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1조제1항중 “3월 내”를 “2월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임원)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,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	제7조(임원) ----- 7인 ----- -----.
제9조(이사) ①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제9조(이사)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점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
②이사중 2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구의 국장으로 하고,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	②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 1.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구의 국장 2인 2. 경영, 회계 및 시설물 관리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,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③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2조(임·직원의 겸업금지)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임원은 구청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<단서신설> 제21조(결산)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	<u>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 제12조(임·직원의 겸업금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----- 제21조(결산) ① ----- 2월 ----- 이내 -----.